

(최근 보험 회사의 암 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)

## 직장 유암종(carcinoid, 카르시노이드, 신경내분비종양, neuroendocrine tumor (NET))의 진단코드 문제와 관련한 대한대장항문학회의 입장

- 유암종이란 내분비 세포나 신경 세포 등에서 기원하여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는 종양을 말하며, 최근에는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불리고 있음. 최근 대장내시경 검사 증가와 함께 직장(rectum)에서 1cm 이하의 크기가작은 유암종 발견이 증가되고 있음.
- 현재 직장 유암종의 병리학적 분류기준 및 진단 코드 부여가 일관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.
- 현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(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; KCD)는 악성신생물(암)은 C-code, 양성신생물(양성종양)은 D-code로 분류하고, 신생물의 위치에 따라 세분하고 있음. 또한 국제종양학분류법(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for oncology; ICD-O)의 행동양식 코드 개념을 함께 도입하여 양성종양은'/0',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인경우'/1', 제자리암(상피내암) 또는 비침윤암은'/2', 침윤암은'/3'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유암종은 '암과 유사한 종양'이라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동양식이나 예후 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종양이었으나, 2000년 국제보건기구(WHO)에서는 "유암종"이라는 용어 대신 "신경내분비종양(neuroendocrine tumor)"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으며, 2010년에는 WHO 개정판을 통해 "**모든 신경내분비종양은 악성위험도(malignant potential)를 갖는다**"고 하면서 TNM 병기 분류를 따르도록 권고하였음.
- 미국암연합위원회(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)의 TNM병기 분류법(7판, 2010년)에 의하면 직장 유암종은 종양의 크기가 1cm 미만이고, 점막하층에 국한된 경우 T1a로 정의하여 **1기 암으로 분류**하고 있음.
- 단,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2010년 WHO 개정판에서 모든 신경내분비 종양은 크기에 관계없이 행동양식 코드(ICD-O)를 '/3'으로 하였으나, 예외적으로L-세포 타입 유암종인 경우 행동양식 코드 '/1'로 한다는 것임. 직장에서 발견되는 유암종의 약 80%가 L-세포 타입 유암종으로 알려져 있음.
- 의학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**현재까지 L-세포 타입의 유암종을 규명할 수 있는 공인된 표지자 또는 병리학적 진단 기준이 명확하게 없는 상태임.**

-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화기병리학연구회에서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우려하여 종양 크기가 1cm미만이고, 혈관 침윤이 없는 직장 유암종은 '1'로 코딩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.
- 하지만 이러한 소화기병리학연구회의 제안은 다음과 같은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.
  - 1) 종양 크기가 1cm 미만이고, 혈관 침윤이 없는 직장 유암종에서도 실제 전이가 가능함.
  - 2) 직장에서 발견되는 모든 유암종이 L-세포 타입 유암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, 행동양식 코드 '1'로 코딩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함.
  - 3) 행동양식 코드 '1'의 경우에도 암환자를 위한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이 가능하므로 실제로 우려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크지 않음.
  - 4) 이미 기존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직경 1cm 미만의 유암종은 내시경적 절제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암 진단에 따른 과잉 치료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음.
  - 5) 오히려 실제 암을 진단받고도 암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소송 등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 발생이 증가되고 있음.
-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.

**“모든 유암종은 악성위험도를 갖고 있다는 기본 전제와 함께 현재까지 L-세포 타입 유암종을 규명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, 직장 유암종은 크기에 관계없이 진단코드 'C20', 행동양식 코드 '3'으로 진단할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바이며,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진단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.”**